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. 7. 11 선고 2017가단229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6. 20.

판결 선고2018. 7. 11.

주 문

1. 피고는 B, C, D, E, F, G, H, I에게 상주시 J 임야 4,443㎡ 중 6/4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98. 12. 19. 접수 제265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B, C, D, E, F, G, H, I에 대한 채권자이다. 한편 피고의

피상속인인 K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. 이에 원고는 B 등 8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2. 적용법조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항성욱